

부산고등법원 2022. 1. 27 선고 2020나5277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데아 담당변호사 민웅기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나병영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호진

변 론 종 결 2021. 12. 16.

판 결 선 고 2022. 1. 27.

제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5. 7. 선고 2018가합100846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2 내지 5항 각 토지에 관하여 2015. 2. 13. 체결된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5. 2.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1,037,697,3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0.부터 2014. 7.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37,697,3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0.부터 2014. 7.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각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면 10행의 “별지 기재 토지”를 “부산 해운대구 R 임야 678m²”로 고쳐 쓴다. ○ 4면 11행부터 5면 12행까지의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 “【 】” 기재와 같이 고쳐 쓴다.

【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5. 2. 13.경 내지 이 사건 매매대상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5. 3. 11. 무렵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았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제기되었다.

②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매매대상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나머지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인 2020. 12. 16.에야 비로소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에는 채무자의 무자력 및 사해의사 등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② 이 사건 매매대상토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일괄하여 매도되었으므로 청구취지변경으로 추가된 이 사건 나머지 각 토지에 관한 소제기의 효과는 당초 소제기 시로 소급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 도과 이전에 적법하게 제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한편, 수 개의 부동산에 관한 일괄 매매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매매계약의 전부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다가 사해행위 이후 저당권이 소멸된 사정을 감안하여 법률상 이러한 경우 원상회복이 허용되는 범위 내의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그에 맞추어 사해행위취소의 청구취지를 변경한 데에 불과한 경우에는 하나의 매매계약으로서의 당해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제기의 효과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비록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당초의 청구취지변경이 잘못

되었음을 이유로 다시 위 매매계약의 전부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다 해도 최초 소제기 시에 발생한 제척기간 준수의 효과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 참조).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제2, 9, 1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무렵 원고와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우선수익자인 주식회사 G이 관계사의 지위에 있었고, 원고의 대표이사인 O이 주식회사 G의 기타비상무이사로 재직하였던 사실, ② 원고는 2018. 2. 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③ 원고는 2019. 5.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1,037,697,36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 피고에게 1,037,697,369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C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거나 C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청구가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의 제척기간 도과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나머지 각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20. 12. 16. 사해행위취소의 목적물에 이 사건 나머지 각 토지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처럼 사해행위취소의 목적물이 추가되는 경우 소의 추가적 변경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추가 시를 기준으로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원고 주장의 요지는, 이 사건 매매대상토지 전부를 일괄하여 매매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소제기 당시 사해행위취소의 목적물은 이 사건 매매대상토지 전부였으므로, 비록 그 이후 청구취지의 변경으로 사해행위취소의 목적물에 이 사건 나머지 각 토지가 추가되기는 하였으나 그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는 최초 소제기 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나머지 각 토지를 제외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만을 구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가 2018. 2. 7.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는 늦어도 그 무렵에는 C이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나머지 각 토지를 매도하였음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17535 판결 참조).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20. 12. 16.에 추가된 이 사건 나머지 각 토지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나머지 각 토지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5. 2. 13.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2020. 12. 16. 비로소 제기되었으므로, 역시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나머지 각 토지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 】

○ 6면 15행부터 7면 8행까지의 “나)”항 부분을 아래 “【 】” 기재와 같이 고쳐 쓴다.【 나) C의 무자력 여부에 관한 판단

(1) 적극재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의 적극재산은 원고 주장에 따르면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합계 10,358,355,000원이다.

재산내역	금액(원)	증거	주장금액(원)
이 사건 매매대상토지	9,807,000,000	이 법원의 해운대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원고 : 9,807,000,000 피고 : 13,850,000,000
부산 해운대구 K	375,270,000	2021. 5. 25.자 감정평가서	다툼 없음
부산 해운대구 J	176,085,000	2021. 5. 25.자 감정평가서	다툼 없음
합계	10,358,355,000		

(가) 이 사건 매매대상토지의 가액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상토지의 가액을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인 138억 5,000만 원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상토지를 138억 5,000만 원에 매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매매대금은 단순히 이 사건 매매대상토지의 객관적인 가치뿐 아니라 이 사건 매매대상토지에 관한 아파트 시공 관련 인허가에 대한 대가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수익권 감정의 필요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당초 이 사건 매매대상토지 등에 관한 C의 수익권에 대한 감정을 통하여 적극재산을 밝히겠다고 주장하다가(항소이유서 7면 참조),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아파트 부지로서의 시가감정을 신청하였다. 이는 이 사건 매매대상토지가 2015. 3. 11.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을 뿐 아니라, 그 무렵 I 주식회사와의 신탁관계도 종료된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 소극재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의 소극재산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합계 9,903,929,557원이다.

채무내역	금액(원)	증거	원고의 주장금액(원)
G	8,665,156,980	다툼 없음 을 제6호증	8,665,156,980
(주)S에 대한 계약금 반환채무	0	을 제16호증	1,500,000,000
원고에 대한 판결원리금 채무	1,161,226,001	다툼 없음 갑 제2호증	1,161,226,001
T(주)	77,546,576	다툼 없음 갑 제19호증	77,546,576
체납국세	0		20,000,000
체납 건강보험료	0		15,485,000
U회사	0		50,000,000
V회사	0		70,000,000
W회사	0		15,000,000
X회사	0		35,000,000
Y(주)	0		260,000,000
Z	0		100,000,000
(주)N 계약금 반환채무	0		3,000,000,000
합계	9,903,929,557		

(가)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금 반환채무에 관한 판단원고는, C이 S로부터 받은 계약금 15억 원은 H이 2015. 2. 13. 이전에 횡령하였거나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적극재산으로 남아있지 않고, 결국 소극재산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은 2015. 2. 13. S과 부산 해운대구 D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하고 계약금 15억 원을 계약해지와 동시에 반환하는 내용의 계약해지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이 H이 이 계약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횡령하였다거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소극재산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체납국세 및 체납 건강보험료 채무에 관한 판단

원고는 갑 제18호증의 기재를 근거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의 소극재산으로 체납국세 2,000만 원 및 체납 건강보험료 15,485,000원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각 채무는 그 발생일자가 2015. 6. 2. 및 2016. 5. 4.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이므로 이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소극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주장도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Y 주식회사(이하 'Y'라 한다) 관련 채무에 관한 판단

원고는, Y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H이 2억 6,000만 원을 횡령하였고 이는 실제로 회수불가능한 부실채권에 해당하여 적극재산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소극재산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Y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Y에 입금된 6,000만 원은 자동차 판매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 한다)로부터 송금 받은 금액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갑 제29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비롯한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H이 2억 6,000만 원을 횡령하였다거나 이를 C의 채무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라)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 관련 채무에 관한 판단

원고는, N에 입금된 30억 원은 H이 횡령한 금액으로 실제로 회수불가능한 부실채권이므로 C의 적극재산에 산입할 수 없고 결국 소극재산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의 IBK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N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① 2015. 5. 11.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30억 원이 자기앞수표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달 15. 그 전액이 출금된 사실, ② N은 C의 요구에 따라 N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을 뿐 어떠한 계약관계도 없었는데, C이 일방적으로 30억 원을 입금했다가 출금한 것에 대하여 거래처원장에 '투자금융치 계약파기반환'으로 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C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N에 30억 원의 채무가 있었다거나 이를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U회사, V회사, W회사, X회사, Z 관련 채무에 관한 판단

원고는, U회사, V회사, W회사, X회사에 대한 각 채무는 C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발생한 채무이고, Z 관련 채무 1억 원은 H이 횡령한 금액으로 실제로 회수불가능한 부실채권이므로, 이는 모두 C의 소극재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를 C의 소극재산에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그 합계액은 2억 7,000만 원(= U회사 5,000만 원 + V회사 7,000만 원 + W회사 1,500만 원 + X회사 3,500만 원 + Z 1억 원)에 불과하여 C의 무자력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결국 원고의 이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3)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은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C의 감사보고서[갑 제11,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해운대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C이 2017. 12. 11. 해산의제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러한 판단과 달리 C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무자력 상태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한편,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27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T 주식회사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단215030호로 C과 AA 사이에 해운대구 J 토지에 관하여 2015. 3. 11. 체결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매매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7. 3. 29.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② 이에 대하여 AA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17나45803 판결),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 기각(대법원 2018다209270 판결)되어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처럼 확정된 판결을 ‘관련 판결’이라 한다), ③ 관련 판결에서는 C이 2015. 3. 11. 당시 무자력 상태였다고 판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관련 판결에서 C의 무자력 상태가 인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앞서 살펴본 증거 및 그에 기초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C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무자력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C에 대한 무자력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C의 책임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2 내지 5항 각 토지에 관하여 2015. 2. 13. 체결된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므로,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형, 판사 이재욱, 판사 박선영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부산 해운대구 R 입야 678m²
2. 부산 해운대구 D 입야 11836m²
3. 부산 해운대구 F 대 1067m²
4. 부산 해운대구 E 대 302.3m²
5. 부산 해운대구 L 대 872.8m². 끝.

